|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1. 답안은 문제 순서대로 작성할 것  2. 계산문제는 계산근거를 반드시 제시할 것  3. 답안은 아라비아 숫자로 원단위까지 작성할 것  (예: 2,000,000 - 1,000,000 = 1,000,000원)  4.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관련 자료·증빙의 제출 및 신고·납부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가정한다.  5.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합법적으로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이하시오.  6. 종합소득세율   |  |  | | --- | --- | | 과세표준 | 세 율 |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 1억 5천만원 초과 |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 |

**【문제 1】(13점)**

다음은 중소기업인 ㈜미래수산의 자료이다. 2015년 제1기 확정신고와 제2기 예정신고는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과세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면세거래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 제시된 금액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
| --- |
| **< 자 료 >**  1. 회사는 수산물을 매입하여 가공(과세) 또는 미가공(면세) 상태로 판매하고 있으며, 회사의 냉동창고 중 여유분을 임대하고 있다. 냉동창고 임대는 일정 면적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분량 이내의 보관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어 냉동창고의 회사사용부분과 임대부분의 실질구분이 어렵다.  2. 구 냉동창고는 2011년 11월 1일에 600,000,000원(토지가 200,000,000원, 건물가 400,000,000원)에 구입하여 회사 수산물 보관에 사용하다 2015년 5월부터 창고 여유분을 ㈜현재수산에 임대하였다. 임대보증금은 없으며, 월임대료는 10,000,000원으로 2015년 5월 1일에 6개월분을 수령하였다.    3. 회사는 2015년 10월 31일에 사용중인 구 냉동창고를 800,000,000원(토지가 300,000,000원, 건물가 500,000,000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다음과 같이 수령하였다.  ① 2015년 6월 25일 계약금 100,000,000원  ② 2015년 8월 31일 중도금 200,000,000원  ③ 2015년 10월 31일 잔금 500,000,000원  4. 냉동창고의 공간부족으로 2015년 11월 1일에 신 냉동창고를 1,600,000,000원(토지가 600,000,000원, 건물가 1,000,000,000원)에 매입하여 이전하였다. 매입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① 2015년 7월 7일 계약금 200,000,000원  ② 2015년 8월 8일 중도금 600,000,000원  ③ 2015년 11월 1일 잔금 800,000,000원  5. 신 냉동창고도 회사 수산물 보관과 임대용의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 냉동창고의 월임대료는 20,000,000원으로 2015년 11월 1일에 1년분을 수령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은 없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015년 수산물의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회사는 면세재화의 수출에 대하여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였다.   |  |  |  |  |  | | --- | --- | --- | --- | --- | | (단위: 원) | | | | | | 구 분 | | 1.1.～6.30. | 7.1.～9.30. | 10.1.～12.31. | | 국내판매 | 미가공 | 4,000,000,000 | 900,000,000 | 800,000,000 | | 가공 | 3,000,000,000 | 800,000,000 | 700,000,000 | | 수출 | 미가공 | 2,000,000,000 | 700,000,000 | 600,000,000 | | 가공 | 1,000,000,000 | 600,000,000 | 500,000,000 | | 합 계 | | 10,000,000,000 | 3,000,000,000 | 2,600,000,000 |   7. 2015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단위: 원) | | | | | 구 분 | 1.1.～6.30. | 7.1.～9.30. | 10.1.～12.31. | | 국내 미가공판매 관련 | 40,000,000 | 9,000,000 | 8,000,000 | | 국내 가공판매 관련 | 80,000,000 | 30,000,000 | 20,000,000 | | 미가공수출 관련 | 20,000,000 | 7,000,000 | 6,000,000 | | 가공수출  관련 | 30,000,000 | 20,000,000 | 15,000,000 | | 공통매입세액\* | - | - | 100,000,000 | | 합 계 | 170,000,000 | 66,000,000 | 149,000,000 |   \* 공통매입세액은 신 냉동창고의 매입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이다.  8. 면세수산물의 매입액은 다음과 같다. 면세수산물의 가공판매 또는 미가공판매에 대한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다.   |  |  |  |  | | --- | --- | --- | --- | | (단위: 원) | | | | | 구 분 | 1.1.～6.30. | 7.1.～9.30. | 10.1.～12.31. | | 면세수산물  매입액 | 6,000,000,000 | 2,200,000,000 | 2,000,000,000 | |

**(물음 1)**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의 매출세액을 다음 양식으로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 --- | --- |
| 구 분 | 과세표준 | 세율 | 매출세액 |
| 수산물 매출 |  |  |  |
| 창고 임대 |  |  |  |
| 창고 매각 |  |  |  |
| 합 계 |  |  |  |

**(물음 2)**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의 매입세액과 관련된 다음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요구사항 1>**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을 계산하시오.

**<요구사항 2>**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시오.

**<요구사항 3>**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시오.

**【문제 2】(7점)**

공인회계사 정세무는 과세사업자인 ㈜과거전자의 신입직원이 작성하여 2015년 4월 25일 신고·납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검토하던 중 다음 사항을 발견하였다.

|  |
| --- |
| **< 자 료 >**  1. 회사는 온라인 매출에 대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결제대금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정신고기간 동안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30,000,000원이며, 동 기간에 사용된 마일리지는 10,000,000원이다. 회사는 매출시에 적립해주는 마일리지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았으며,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결제되는 매출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결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였다.  2. 회사는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거래처에 대하여 현금 또는 판매용 상품으로 판매장려금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정신고기간 동안에 지급된 현금 판매장려금은 20,000,000원이고, 판매장려상품은 시가로 60,000,000원(원가 40,000,000원)이다. 회사는 지급한 판매장려금과 판매장려상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판매비로 회계처리하였다.  3. 회사가 예정신고기간 동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은 50,000,000원이다. 동 금액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되어 신고되었다.  4. 회사는 1월 15일에 재화를 인도하고 2월 25일에 대금 70,000,000원을 받은 거래에 대하여 2월 25일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2월 26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였고,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5. 특판 사업부의 매입 60,000,000원과 매출 80,000,000원에 대하여 실수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신고도 누락되었다. |

**(물음)** 2015년 7월 25일 확정신고시에 위 오류를 수정하여 신고할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포함)와 가산세를 다음 양식에 따라 계산하시오. 단, 위 오류는 회사 직원의 세법 지식 부족으로 발생한 사항이며, 조세회피를 위한 고의적인 오류는 아니다.

(답안 양식)

|  |  |  |  |  |
| --- | --- | --- | --- | --- |
| 자료  번호 | 부가가치세 추가납부세액 | 가산세 종류 | 계산식 | 가산세액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합계 |  |  |  |  |
| 과소신고가산세 | |  | |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 |

**【문제 3】(28점)**

전기 사업연도 이전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것으로 가정한다.

**(물음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강북(중소기업이 아님)의 제15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자료를 이용하여 답안 양식에 따라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시오. 단, ㈜강북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제14기 4월 20일에 취득한 기계장치A의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과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구 분 |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 |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 | 제14기 | 50,000,000원 | 14,252,500원 | | 제15기 | 58,000,000원 | 16,418,515원 |   ① 제14기 9월 20일에 기계장치A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5,000,000원(주기적인 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② 제15기 4월 12일에 기계장치A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8,000,000원을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였다.  2. 제15기 10월 15일에 특수관계인 ㈜강서로부터 기계장치B(시가 60,000,000원)를 매입하고, 매입가액인 80,000,000원을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 제15기에 기계장치B에 대한 감가상각비 10,00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기계장치B는 ㈜강서가 2년간 사용한 것이다.  3. 제15기에 취득한 비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비품A: 10월 2일에 복사기를 5,000,000원에 매입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소모품비)으로 계상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비품B: 7월 15일에 회의용 탁자를 6,000,000원에 취득하고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 제15기에 비품B에 대한 감가상각비 584,000원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4. ㈜강북은 기계장치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으로, 내용연수는 6년으로 신고(기준내용연수: 기계장치 8년, 비품 5년)하였다. 내용연수별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내용연수 | 4년 | 5년 | 6년 | 8년 | | 상각률 | 0.528 | 0.451 | 0.394 | 0.313 | |

(답안 양식)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물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남해의 제15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전기말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기말잔액의 내역   |  |  | | --- | --- | | (단위: 원) | | | 과 목 | 기말잔액 | |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4,000,000 | | 외상매출금 대손부인액 | 10,000,000 | | 받을어음 대손부인액 | 5,000,000 |   ① 전기의 대손실적률은 0.6%이다.  ② 외상매출금 대손부인액 중 4,000,000원은 당기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③ 받을어음 대손부인액은 2014년 8월 20일에 부도발생한 어음 2매를 대손처리한 것이다. 그 중 1매(3,000,000원)를 당기 중 회수하여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였다.    2. 당기 대손충당금 계정의 내역   |  |  |  |  | | --- | --- | --- | --- | | (단위: 원) | | | | | 기초잔액 | 당기 상계액  (감소) | 당기 설정액  (증가) | 기말잔액 | | 20,000,000 | 10,000,000 | 15,000,000 | 25,000,000 |   3. 당기 대손충당금 상계액의 내역  ① 5월 20일에 부도발생한 거래처A에 대한 외상매출금: 3,000,000원(부도발생일 이전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  ② 거래처B와의 거래관계 개선을 위하여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금액: 1,000,000원  ③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외상매출금: 6,0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채권의 내역   |  |  | | --- | --- | | 과 목 | 금 액 | | 외상매출금 | 600,000,000원 | | 받을어음 | 400,000,000원 | | 대 여 금 | 300,000,000원 | | 합 계 | 1,300,000,000원 |   ① 외상매출금: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20,000,000원과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외상매출금 7,000,000원 포함  ② 받을어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로 보는 할인어음 30,000,000원 포함  ③ 대여금: 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액 50,000,000원과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 100,000,000원 포함 |

**<요구사항 1>**

당기의 대손실적률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대손실적률 계산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예: 2.627% → 2.62%)

(답안 양식)

|  |  |
| --- | --- |
| 당기 대손금(Ⓐ) |  |
| 전기말 채권잔액(Ⓑ) |  |
| 당기 대손실적률(=Ⓐ÷Ⓑ) |  |

**<요구사항 2>**

당기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요구사항 1>에 의한 당기의 대손실적률은 1.5%로 가정한다.

(답안 양식)

|  |  |
| --- | --- |
| 당기말 채권잔액 |  |
|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액 |  |
|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

**(물음 3)** ㈜영남은 제15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영남의 제15기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단위: 원) | | | 당기순이익 | 1,800,000,000 |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650,000,000 |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420,000,000 | | 차가감소득금액 | 2,030,000,000 |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15,000,000 |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 45,000,000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2,000,000,000 | | (-)이월결손금 | 400,000,000 | | 과세표준 | 1,600,000,000 |   2.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의 내역  ① 법인세비용: 300,000,000원  ② 접대비 한도초과액: 150,000,000원  ③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200,000,000원    3.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의 내역  ① 국세환급가산금: 20,000,000원  ②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350,000,000원  ③ 정기예금 미수이자: 50,000,000원  4. 제15기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  ① 현금배당: 500,000,000원  ② 주식배당: 200,000,000원  ③ 상법상 이익준비금: 70,000,000원  5. 제15기 사업용자산 투자 및 감가상각비 내역   |  |  |  | | --- | --- | --- | | (단위: 원) | | | | 과 목 |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 | | 기계장치 | 800,000,000 | 60,000,000 | | 차량운반구 | 30,000,000 | 5,000,000 | | 비 품 | 50,000,000 | 10,000,000 | | 합 계 | 880,000,000 | 75,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중 리스에 의한 투자는 없으며, 차량운반구는 중고자산을 취득한 것이다.  ②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 이내 금액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된다.  6. 제14기와 제15기의 임금지급액 내역   |  |  |  | | --- | --- | --- | | (단위: 원) | | | | 구 분 | 임원 | 사용인 | | 제14기 | 500,000,000 | 1,000,000,000 | | 제15기 | 600,000,000 | 1,300,000,000 | | 증가액 | 100,000,000 | 300,000,000 | |

**<요구사항 1>**

제15기의 기업소득을 투자액 차감방식(미환류소득 계산시 투자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2,000,000,000원 |
| (+) 가산액 |  |
| (-) 차감액 |  |
| 기업소득 |  |

**<요구사항 2>**

제15기의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투자액, 임금증가액 및 배당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투자액 |  |
| 임금증가액 |  |
| 배당액 |  |

**<요구사항 3>**

제15기의 미환류소득을 투자액 차감방식과 투자액 미차감방식(미환류소득 계산시 투자액을 차감하지 않는 방식)에 의하여 각각 계산하고,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요구사항 1>에 의한 기업소득은 3,000,000,000원(투자액으로 차감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100,000,000원 포함)으로 가정한다.

(답안 양식)

|  |  |
| --- | --- |
| 미환류소득(투자액 차감방식) |  |
| 미환류소득(투자액 미차감방식) |  |

**(물음 4)**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호남의 제15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호남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800,000,000원이며, 아래 제시된 내역을 제외하고는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회사는 10월 5일에 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10월 말일부터 매월 말일에 2,000,000원씩 총 20개월에 걸쳐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인도기준에 의하여 인도일에 할부매출액 40,000,000원과 할부매출원가 32,000,000원(원가율: 80%)을 계상하였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전기 외상매출 누락액 100,000,000원을 당기에 회수하고 매출액으로 계상하였다.  ③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5,000,000,000원(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 1,000,000,000원 포함)이며, 접대비는 50,000,000원이다.  2. 제14기에 300,000,000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며, 제13기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500,000,000원  ② 산출세액: 100,000,000원(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0,000,000원 포함)  ③ 공제·감면세액: 50,000,000원    3. 사업연도별 연구 및 인력개발비(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없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사업연도 | 연구 및 인력개발비 | | 제11기 | 100,000,000원 | | 제12기 | 200,000,000원 | | 제13기 | 50,000,000원 | | 제14기 | 150,000,000원 | | 제15기 | 200,000,000원 | |

**<요구사항 1>**

㈜호남이 중소기업일 경우와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로 구분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결손금을 소급공제하는 경우에는 공제한도까지 최대한 소급공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답안 양식)

|  |  |  |
| --- | --- | --- |
| 구 분 | 중소기업 | 비중소기업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
| (-) 이월결손금 |  |  |
| 과세표준 |  |  |

**<요구사항 2>**

㈜호남이 중소기업일 경우와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며, 중견기업이 아님)로 구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중소기업 |  |
| 비중소기업 |  |

**【문제 4】(7점)**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동의 제15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당기 주식 취득 및 감자 내역  ① 1월 20일에 상장법인인 ㈜A의 주식 900주(지분비율 9%)를 9,000,000원에 취득하고, 실제 매입가액을 단기매매증권으로 회계처리하였다.  ② 2월 20일에 ㈜A로부터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100주를 수령(1주당 액면가 5,000원, 시가 11,000원)하였다.  ③ 3월 30일에 ㈜A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보유주식 중 500주를 반납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  |  |  | | --- | --- | --- | | (차) 현 금 6,000,000 | |  | |  | (대) 단기매매증권 4,5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1,500,000 | |   2. 당기 현물출자 내역  ① 특수관계인이 아닌 비상장법인 ㈜B(현물출자 당시 계속 사업을 영위하던 기존 법인임)에 토지(시가 80,000,000원, 장부가액 50,000,000원)를 현물출자하고, 주식 5,000주(시가 60,000,000원, 액면가액 25,000,000원)를 수령하였다.  ② 현물출자(적격현물출자에 해당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  |  |  | | --- | --- | --- | | (차) 매도가능증권 80,000,000 | |  | |  | (대) 토지 50,000,000  토지처분이익 30,000,000 | |   3. 당기 기부금 내역  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이 반영된 후의 소득금액은 33,000,000원이다. |

|  |
| --- |
| ②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 300,000,000원인 토지를 200,000,000원에 매각하고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 30,000,000원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였다.  ③ 서울시청으로부터 시가 100,000,000원인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50,000,000원에 매입하고 매입가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  ④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현물(장부가액 3,000,000원, 시가 4,000,000원)을 기부하고, 장부가액을 손익계산서에 기부금으로 계상하였다.  ⑤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2008년 발생분 5,000,000원, 2012년 발생분 7,000,000원이다. |

**(물음)** 아래의 답안 양식에 따라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문제 5】(13점)**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물음 1)** <자료 1>을 이용하여 갑의 2015년도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자료 1>**  갑의 금융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A의 2014년 사업연도(결산확정일: 2015년 2월 25일)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1,000,000원    2.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7,000,000원    3. 2013년 3월 1일 발행된 장기채권(만기 12년)으로부터 발생한 2015년 귀속 이자소득: 4,000,000원  4. ㈜B의 잉여금처분결의에 따른 현금배당: 3,000,000원(㈜B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잉여금처분결의일은 2015년 3월 20일이며, ㈜B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은 시장평균의 130%이고, 전기 대비 배당증가율은 15%임)    5.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금: 10,000,000원  6.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 5,000,000원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7. 보유 중인 ㈜C 주식 1,000주의 유상감자로 현금 12,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해당 주식의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13년 5월 2,000주를 25,000,000원에 취득  ② 2014년 5월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500주 수령(1주당 액면가 10,000원, 시가 15,000원)  ③ 2015년 1월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500주 수령(1주당 액면가 10,000원, 시가 12,000원)  8.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7,000,000원(이자1,500,000원, 배당 4,000,000원, 상장주식처분이익 1,500,000원으로 구성됨) |

(답안 양식)

|  |  |
| --- | --- |
|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  |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
| 귀속법인세액(Gross-up금액) |  |
|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 |  |

**(물음 2)** <자료 2>를 이용하여 갑의 2015년도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및 근로소득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2>**  ㈜D의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는 갑의 근로소득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급여합계액(월 3,000,000원): 36,000,000원  2. 2015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2016년 2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4,000,000원  3. 회사가 갑의 퇴직급여로 지급하기 위하여 당기에 적립한 금액: 2,500,000원(회사는 별도의 퇴직연금 적립규칙이 없음)  4. 회사의 2015년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3,000,000원  5.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월 250,000원): 3,000,000원(갑은 시내출장에 대한 여비를 받지 않음)  6. 회사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무상대여로 얻은 이익: 1,500,000원  7. 신입직원 교육을 위한 사내 강사료: 2,000,000원  8. 근로소득공제액표   |  |  | | --- | --- | | 총급여액 |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총급여액-500만)×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총급여액-1억원)×2% | |

(답안 양식)

|  |  |
| --- | --- |
| 총급여액 |  |
| 근로소득공제액 |  |
| 근로소득금액 |  |

**(물음 3)**  <자료 3>을 이용하여 갑의 2015년도 기타소득금액(분리과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자료 3>**  갑의 기타소득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1. 지상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액: 3,000,000원    2.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금액: 4,000,000원  3. 계약의 위약으로 받은 배상금으로 계약금이 배상금으로 대체된 금액: 2,000,000원  4. ㈜E의 제10기(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2,500,000원 |

(답안 양식)

|  |  |  |
| --- | --- | --- |
| 구 분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액 |
| 1 |  |  |
| 2 |  |  |
| 3 |  |  |
| 4 |  |  |
| 합 계 |  |  |

**(물음 4)** 종합소득공제액이 37,47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배당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일반산출세액 |  |
| 비교산출세액 |  |
| 배당세액공제액 |  |

**【문제 6】(11점)**

다음은 거주자 갑(남성)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종합소득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이자소득금액 | 25,000,000원(정기예금이자) | | 근로소득금액 | 28,750,000원(총급여액: 40,000,000원) | | 사업소득금액 | 8,750,000원(복식부기의무자임) | | 합 계 | 62,500,000원 |   2.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배우자(총급여액 3,300,000원 있음)  ② 장남(20세, 장애인, 총급여액 6,000,000원 있음)  ③ 장녀(6세, 유치원생)  ④ 차남(2세)  ⑤ 부친(85세, 소득 없으며 2015년 5월 22일 사망)  3. 종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기타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분: 750,000원  ② 본인의 자동차 종합보험료 납부액: 8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관련 지출내역  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2,500,000원  나. 국민주택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3,000,000원  다. 국민주택임차를 위한 월세지급액: 6,000,000원  ④ 본인 및 동거가족의 신용카드사용 내역(2014년 신용카드사용액은 2013년 신용카드사용액을 초과하지 않음)   |  |  |  | | --- | --- | --- | | (단위: 원) | | | | 구 분 | 사용금액 | 포함되어 있는 금액 | | 본인 | 신용카드  7,000,000 | 국외사용분: 800,000  대중교통이용분: 1,000,000 | | 배우자 | 직불카드  6,000,000 | 지방세납부액: 500,000 | | 현금영수증  9,000,000 | 전통시장사용분: 2,500,000 | | 장남 | 신용카드  5,000,000 | 대중교통이용분: 500,000 |   ⑤ 연금계좌 납입금액   |  |  | | --- | --- | | 구 분 | 금 액 | | 연금저축계좌 | 4,800,000원 | | 퇴직연금계좌 | 2,000,000원 |   ⑥ 의료비 지출내역   |  |  |  | | --- | --- | --- | | 의료비내역 | 지출대상 | 금 액 | | 시력보정용 안경구입 | 본 인 | 600,000원 | | 재활치료비 | 장 남 | 3,500,000원 | | 건강진단비 | 배우자 | 1,000,000원 | | 건강증진 보약구입 | 부 친 | 1,500,000원 |   ⑦ 교육비 지출내역   |  |  |  | | --- | --- |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본 인 | 10,000,000원\* | 야간 경영대학원 교육비 | | 장 남 | 7,000,000원 |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지출한 특수교육비 | | 장 녀 | 2,000,000원 | 어린이집 수업료 |   \*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중 50%는 직장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동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 |

**(물음 1)** 종합소득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항목별로 각각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인적공제액 |  |
| ××공제액 |  |
| △△공제액 |  |
| … |  |

**(물음 2)** 세액공제액(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세액공제한도는 고려하지 않음)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세액공제액 |  |
| △△세액공제액 |  |
| … |  |

**【문제 7】(7점)**

다음은 거주자 갑의 양도소득 관련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갑은 2009년 3월 1일 타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50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매매계약서로 입증된다.  2. 위 상가에는 갑이 매수할 때 A은행에서 차입한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00,000,000원,실제 채무액 20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다.    3. 갑과 그의 아들 을은 다음 조건으로 위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0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① 매매가액: 800,000,000원  ② 을이 갑의 A은행 차입금 200,000,000원 인수  ③ 잔금 600,000,000원은 2015년 10월 1일까지 지급하기로 함    4. 위 매매가액은 당시 시세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가액이다. 을은 그 동안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5. 위 상가와 관련하여 갑이 지출한 기타비용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단위: 원) | | | | 구 분 | 일 자 | 금 액 | | 취득세 | 2009. 3. 5. | 2,000,000 | |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기타 양도비용 | 2009. 3. 5. | 250,000 | | 도배비용 | 2009. 3. 10. | 500,000 | | 자본적 지출 | 2011. 5. 30. | 10,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   |  |  | | --- | --- |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이상 4년미만 | 10% | | 4년이상 5년미만 | 12% | | 5년이상 6년미만 | 15% | | 6년이상 7년미만 | 18% | | 7년이상 8년미만 | 21% | |

**(물음 1)** 갑과 을의 매매거래가 금융거래 자료에 의하여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갑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오.

**(물음 2)** 갑과 을의 매매거래가 금융거래 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갑의 A은행 근저당권 설정과 을의 채무인수만 입증되었다고 가정한다. 위 자료에 의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요구사항 1>**

갑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양도가액 |  |
| 취득가액 |  |

**<요구사항 2>**

관할세무서장이 을에게 부과할 수 있는 세목의 종류와 과세가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세 목 |  |
| 과세가액 |  |

**【문제 8】(6점)**

거주자 갑은 2014년 11월 15일 ㈜씨네로부터 영화플러스영화관 운영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받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아래의 자료를 토대로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 자 료 >**  1. ㈜씨네는 2014년 10월 24일 영화관 사업에 관하여 2014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않았다.  2. ㈜씨네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2014년 12월 5일 ㈜씨네에 위 미납한 부가가치세 30,500,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500,000원 포함)의 납부기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정하여 납세고지하였다.  3. 관할세무서장은 ㈜씨네가 납부기한이 경과하도록 위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씨네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지만,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였다.  4. 관할세무서장은 2015년 5월 8일 갑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35,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물음 1)** 관할세무서장이 갑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근거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물음 2)** 관할세무서장이 갑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서술하시오.

**【문제 9】(8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 자 료 >**  1. 거주자 갑은 2015년 5월 6일에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가액은 주택 1채(상속세및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함) 시가 1,000,000,000원, 상가건물 시가 500,000,000원, 은행예금 100,000,000원이다.  ① 갑은 거주하던 주택의 방 한칸을 전세 놓아 세입자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이 있다.  ② 갑은 2014년 10월 1일 저축은행에서 60,000,000원을 차입하였으며, 전액 사용용도가 입증되지 않는다.  ③ 장례비는 1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지출은 입증되었다.  2. 갑의 유족은 배우자 병과 20세된 아들(을)뿐이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병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을이 전부 상속받았다.  3. 갑은 2012년 5월 6일 당시 17세인 그의 아들 을에게 토지 1,000m2(논, 시가 200,000,000원)를 증여하였고, 을은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을은 2015년 2월 1일 위 토지를 대지로 형질변경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토지의 시가가 1,000,000,000원으로 상승하였다.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50,000,000원이고, 위 토지 보유기간동안 평균지가상승률을 감안한 정상적인 가치상승률은 10%로 가정한다. |

**(물음 1)** 아래 답안 양식에 따라 갑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총상속재산가액 |  |
| 사전 증여재산가액 |  |
| 상속세 과세가액 |  |
| 상속세 과세표준 |  |

**(물음 2)** 아래 답안 양식에 따라 2015년에 을이 부담하여야 하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증여재산가액 |  |
| 증여세 과세표준 |  |

**- 끝 -**

여 백